

□ 國公立大學圖書館協議會 會則

- 제 정 1979. 5. 25 (제28차 총회)
- 1차 개정 1981. 5. 8 (제30차 총회)
- 2차 개정 1982. 6. 18 (제32차 총회)
- 3차 개정 1984. 6. 29 (제36차 총회)
- 4차 개정 1989. 7. 7 (제41차 총회)
- 5차 개정 1992. 7. 11 (제44차 총회)
- 6차 개정 1997. 7. 14 (제49차 총회)
- 7차 개정 2001. 12. 21. (제53차 총회에서 위임)

제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국공립대학 도서관협의회라 칭한다.
- 제2조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교 도서관내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회는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상호협력과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공립대학 도서관장 및 중견관리자로 한다.

제2장 조 직

- 제5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사 약간인
 - 4. 감사 2인
- 제6조 (임원선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7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

③ 이사는 본회의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경리 및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보직이 경질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로 하여금 잔임 기간 보임토록 한다.

제3장 임원회

제9조 (임원회 구성) ①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②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회의 의결 정족수)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11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회장이 제안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장 사 업

제12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도서관 업무개선에 관한 공동연구 및 건의
2. 도서관 업무에 관한 간행물 출판
3. 실무연수 및 도서관학 세미나 개최
4. 도서관 자료의 교환
5. 각 대학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정보교환
6. 도서관업무 전산화 추진에 관한 협의
7. 회원 표창에 관한 사항(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회 의

제13조 (총회) ①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정기총회 의결사항)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개선
3. 감사결과 보고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임원회에 위임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장 재 정

제15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16조 (회비)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일로 한다.

제7장 사무국장 및 총무

제18조 (사무국장 및 총무) ①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총무를 둔다.

② 사무국장 및 총무는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회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총무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본 회칙은 197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8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